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한다.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제1조 (목적) 충청북도 실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에게 첨단산업기자재의 공동실습을 통하여 교수·학습 능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적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이하 "실습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위치) 실습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실습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산업기계 공동실습교육
2. 실업계교원의 농업 또는 공업관련 특별연수
3. 기타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제4조 (소장 등) ①각 실습소에 소장과 부소장을 두며, 소장은 설치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

②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하부조직) ①각 실습소에 연수과와 서무과를 두고 연수과장은 설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중에서 임명하되 주임교사로 보하며 서무과장은 학교의 서무책임자가 겸임한다.

②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실기능력이 우수한 교사를 우선적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분장) ①연수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학생교육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실과교원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재개발 및 교육내용 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② 서무과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2. 예산편성·운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물품구매·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서무에 관한 사항

제7조 (정원배치) 실습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정원에 대하여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수당) 실습소의 교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예산) 실습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제10조 (시행규칙) 기타 실습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족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농업기계공동실습소는 이 조례에 의한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로 본다.

< 별표 >

실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

명 칭	설 치 학 교	위 치
충청북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청주농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내덕 1동 322
충청북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영동 79